

『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조례의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(안 제3조, 제4조)
- 근로자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근로복지시설 설치·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)
-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」은,

- 근로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,
- 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근거한 고충 상담 사업 지원, 불합리한 차별방지,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·홍보 등의 사항을 담아 올바른 근로자 복지문화 정착과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증진 및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관내 8만여 근로자의 노동권익 확보와 향후 노동정책 및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